

학생회칙 일부개정회칙안 목적 및 경위

1. 개정 목적 및 경위

제2023-17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감사위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피감기관의 장으로 축소하였음에도 학생회칙 상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감사위원 및 임시위원 인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.

2.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5조(감사독립의 원칙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회 의결·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. 2. 감사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본회 대표자</u> 2. <u>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</u> 3. <u>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. 단,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.</u> 4. <u>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</u> 5. <u><신 설></u> 6. <u><신 설></u> 	<p>제125조(감사독립의 원칙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회 의결·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. 2. 감사위원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장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.</u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집행기구</u> 2. <u>자치기구</u> 3. <u>감사원을 제외한 전문기구</u> 4. <u>특별기구</u> 5. <u>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</u> 6. <u>그 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</u>
목적 및 경위	<p>지난 제2023-1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감사시행세칙 제14조(겸직금지 조항)의 겸직금지 범위를 '피감기관의 장'으로 축소하였으나, 현행 학생회칙 제125조가 이와 상충하여 임시위원 인준에 어려움이 있음. 따라서 학생회칙과 감사시행세칙이 서로 상충하면서 생기는 혼란을 해소하고, 감사위원 및 임시위원 모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</p>